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가합45168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진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경태, 송현아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국내외 투자 및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0. 27.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3. 3. 13. 서울회생법원에 2023회합100043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4. 7.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C, D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3. 6. 30. 원고가 피고를 인수하기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의 계약금으로 1,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 중화인민공화국인 C, D

을 : 원고

피고(이하 이 항에서 "회사"라 한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회생 법원(이하 "회생법원")으로부터 2023. 4. 7.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갑"은 회사의 M&A(이하 "본 거래")를 위하여 E회계법인을 매각주 간사(이하 "주간사")로 선정하고, 회사의 인수에 관심이 있는 인수희망자들을 상대로 인수의 향서 등의 안내서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갑"과 "을"은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을"과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하되, 회사에 대한 본 거래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진행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을"은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하였으며, 향후 공개경쟁입찰 절차에서 인수의향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을"의 인수 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

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을"은 2023년 6월 30일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함과 동시에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갑"이 지정한 "갑" 명의의 계좌에 금 십일억오천만원(₩1,150,000,000)을 예치하였다.

이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3조(M&A 절차 및 인수대금)

2. "갑"은 본 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을"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 투자하는 금 일백십오억원(₩11,500,000,000)에 다음 표와 같이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하되, 구체적인 인수조건은 제8조에 따른다. (중략)

### 제5조(계약금)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 전에 "갑"이 지정하는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계약금을 예치하였다.

2. "갑"과 "을"은 계약금(발생이자 포함, 제세공과금 제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이 예치된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상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갑"을 질권설정자, "을"을 질권자로 하여 [별첨 #1]에 첨부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3. 제12조 제1항이나 그 밖의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발생이자와 함께 위약별로 회사에 귀속되고,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예금반환청구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본 계약이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갑"은 즉시 계약금(발생이자 포함, 제세공과금 제외)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인수대금의 예치 및 납입)

1. "을"은 인수대금 중 "을"이 제5조에 따라 기납부한 계약금(발생이자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갑"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의 5영업일 전까지, "갑"이 지정한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민국 통화인 현금 또는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예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인수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예금계좌상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갑"을 질권설정자, "을"을 질권자로 하여 [별점#2]에 첨부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제8조의2(회생계획안의 제출 등)

"갑"은 "을"이 최종 인수예정자가 된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본 계약의 내용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을"은 "갑"에게 회생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다만,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과 "을"은 협의하여 회사의 재정상태 향후 사업전망, 이해관계인들의 이해 등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을"도 빠른 시일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 및 인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해제)

1.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갑"이 "을"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을"이 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을"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갑"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당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법원이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이 예치한 계약금 및 인수대금의 귀속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조 제3항 및 제7조 제4항에 따른다.

라. 원고는 2023. 1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내용증명

제목 : (주)B 인수 계약금 반환 요청

2. 당사가 인수 추진 중이던 (주)B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수절차를 중단하며, 2023.

11. 23.로 예정된 잔금(이하 ‘이 사건 인수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3. 하기 사유는 (주)B 회생절차 폐지에 이르게 된 원인(잔금 미납)의 근본적인 사유가 귀사에 있으므로 회생절차 폐지가 당사의 귀책이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4. 이에 당사가 귀사에 납부한 계약금{금 십일억오천만원정(₩1,150,000,000)} 반환을 요청합니다.

### <다음>

가. 2023년 11월 23일 당사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것은 동일자 기준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이 7.31%에 불과하여 인가기준에 크게 미달하며,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자 비율이 62.9%(주)F, 신용보증기금, C)이므로 인가를 위한 동의율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가가능성이 사실상 없음.

나. 2023년 6월 30일 조건부투자계약 체결 이후 인수대상 회사의 재산가치가 아래와 같이 현저히 손상되었음.

(1) 유치권자와 회생담보권자와의 분쟁으로 조사확정재판이 지연되어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인수 이후 판매가능성이 없음

(2)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대한 채권이 미확정된 상태로 인가 이후 당사가 추가부담 할 금액이 존재할 가능성 존재

(3) G 전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이의제기 및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인수 이후 회사 운영에 대한 사법리스크 존재

(4) 건설중인 창고의 3층 붕괴 후 방치로 인하여 공사 재개시 추가 공사비 발생가능성 존재

(5) 2023년 12월 예정된 지방세 세무조사로 세무리스크 존재

(6) 전 대표이사인 G과 관련된 소송 등의 원인으로 중국내 매출처, 한국내 매입처와의

거래가 단절되어 회생절차 진행 이후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

마. C, D는 2023. 9. 8. 서울회생법원에 피고의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2023. 11. 27. 위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철회하였고,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3. 1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1)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이 성립됨에 있어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이 2023. 11. 23.경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투자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주위적 청구원인’이라 한다).
- 2) 설령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이 위 1)항과 달리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계약은 그 전제인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7조,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예비적 청구원인’이라 한다).

##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내용증명은 원고가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내용증명에는 기재된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재산가치가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재산가치가 현저히 손상되었음을 판단하려면,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무렵 피고의 재산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재산가치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바 없다.

③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에 관한 사정변경의 사유 중 화장품 유통기한의 임박, 피고가 보유한 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진행, 피고의 전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이의제기, 매출매입처와의 거래 단절 등은 모두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 투자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에 해당한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이었던 C, D가 2023. 11. 27.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회생계획안 철회 및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회생법원이 2023. 11. 28.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서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기일(2023. 11. 30.) 5영업일 전인 2023. 11. 23.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23. 11. 23. 피고에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인수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건부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원고의 귀책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한승철, 판사 장보순